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 - 568호

「제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7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제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1. 시범사업 목적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근무제를 정착시키고, 체계적인 간호 교육 지원으로 신규 간호사의 임상역량을 강화하여,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를 통해 의료 질 향상 및 환자 안전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시범사업 기간 : '25. 9. 1. ~ '27. 12. 31.

* 시범사업 기간은 추진 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추후 선정결과 통보 문서 확인)

3. 신청 대상 및 절차

가. 신청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간호등급) 상급종합병원 1등급, 종합병원 1등급, 병원 3등급 이상

- 의료취약지¹⁾ 및 군(郡)지역 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²⁾은 종합병원 2등급, 병원 4등급 이상인 경우에도 참여 가능

*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

** 지속 참여중인 1차 시범기관은 '26.9.30.까지 간호등급 요건 유예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따른 의료취약지역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의거한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공공보건기관(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을 제외한 공공의료기관

○ (인력운영) 일반병동 간호사 수 20명 이상

*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 산정인원 기준으로 정신과 폐쇄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외

나. 신청서 제출

○ 기간: '25. 7. 16.(수) ~ '25. 7. 29.(화) 18:00까지 (서류제출 완료분에 한함)

○ 서류: ❶ 참여 신청서 [별지 제1-1호] ❷ 계획서 [별지 제2-1호, 엑셀파일 제출] ❸ 이행약정서 [별지 제3호] ❹ 시행 합의서(선택) [별지 제4호]

○ 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제출

▶ (접속방법 1)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시범사업 신청] > [시범사업 대상 기관 신청] > 제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 (접속방법 2)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바로가기) > [시범사업 신청] >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 제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 세부 신청방법 '참고2' 참조

○ 기타사항: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담당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체계혁신부(033-739-1515,1518,15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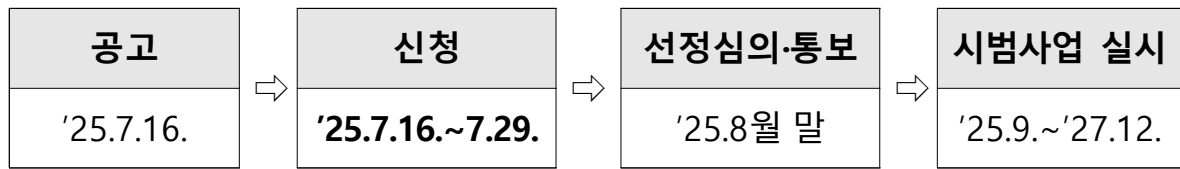
다.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가. 신청 대상' 요건 및 교대제 개선 참여 병상 수 충족 여부, 시범사업에 대한 기관장의 의지, 대체간호사 팀 전환 계획, 평가 효율성 및 성과확산 측면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일반병동 병상수의 50% 이상 참여 필요(단, 참여병동 전체 간호사는 20명 이상)

** 지속 참여중인 1차 시범기관은 '25.12.31.까지 1차 사업 형태로 운영 가능

○ 선정절차



- 선정방법 : 서류심사 및 시범사업 성과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선정결과 발표 : 8월 말 개별통보

4.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

※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및 충실한 평가를 위해 협조하여야 하므로, 귀 기관의 여건(인력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약정체결 및 시범사업 수행

-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병원은 시범사업 시작 전 준수사항에 대해 이행약정을 체결하고,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각종 지침 준수 및 미준수 시 지정취소

-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지침 및 자료제출 의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 중단 또는 시범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자료 요구 시 제출 및 평가자료 제출 의무

- 시범사업 기관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자료를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하여 요청 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함

5. 설명회 안내

- 일시: 2025. 7. 22.(화) 14:00 ~
- 장소: 비대면 온라인(CISCO-Webex 이용)
- 내용: 제2차 시범사업 주요 개정사항
- 신청방법 : 온라인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요양기관은 사전 신청 필요
 - (신청기간) 2025. 7. 16.(수) ~ 2025. 7. 18.(금)
 - (신청방법) URL 접속 또는 우측 QR코드 스캔
 - ♦ (URL) <https://naver.me/GPlwaI3g>
 - * 접속 링크(URL) 및 자료는 설명회 전 사전 신청자 이메일로 송부 및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공지사항 내 공지 예정
 - ** 기관당 2계정 이내 접속 가능
-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체계혁신부(033-739-1515,1518,1523)



제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신청서

기 관 명		요양기관기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업무 담당자	성명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본 의료기관은 제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에 참여를 신청하고
사업참여 관련 서류를 첨부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첨부> 1. 제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계획서
2.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3. 시범사업 시행 합의서(선택)

[별지 제2-1호 서식] 제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계획서

- 별첨 엑셀 파일 참조

제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기 관 명 :

요양기관기호 :

위 기관은 제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수행기관(이하 “시범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지원금 반환 및 시범사업 기관 지정 취소 등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조치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본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1. 의무 및 협조

가. 시범기관은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당사자인 간호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복지부가 협의 등을 요청하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나. 시범기관은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복지부의 요청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범기관은 복지부의 시범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시범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관련 자료를 복지부가 시범사업에 대한 점검,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하여 요청할 때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사유로 의료기관 출입을 요청하거나 관련서류의 열람 등을 요구할 때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범기관은 참여병동 간호사가 알 수 있도록 시범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시범기관은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복지부가 협의 등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운영계약 체결 및 관련서류 제출 등

가. 시범기관은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간호사에 대해 직접 고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시범기관은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간호사 운영과 관련한 인력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3. 점검상의 조치

가. 복지부는 시범사업 수행에 대한 지도점검 및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료기관을 출입하거나 관련서류의 열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나. 복지부는 시범기관이 시범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범기관에 대해 시범사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시범사업의 중단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기간 중 폐업하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범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기간 동안 시범사업 참여 및 지원금 지급이 중단된다.

5. 제재조치 등

- 가.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운영지침 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관련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 나. 시범기관은 착오,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지체 없이 건보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 다. 건보공단은 가~나목에 따른 확인점검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범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련 금액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라. 가~나목에 의하여 시범기관이 반환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건보공단이 시범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 등과 반환할 금액을 상계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전액 환수되지 않는 경우 현금고지하여 반환명령을 할 수 있다.
- 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건보공단은 시범기관이 가~다목의 사유에 해당한 때 또는 이행약정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등의 사유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범기관의 시범사업 중단 등의 조치를 복지부에 요청할 수 있다. 이때, 복지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시범기관의 시범사업 중단 등의 조치를 한다.

6. 준용

이 이행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년 월 일

기관장 (직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제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시행 합의서

- 요양기관명칭:
- 요양기관기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본 의료기관은 제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채용 및 배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간호사 대표진, 노동조합 등과 협의하여 시행 할 것을 합의합니다.

202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인)

간호사 대표

(인)

노동조합

참고 1

「제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주요 내용(요약)

※ 사업운영에 대한 구체적 세부내용 및 질의응답은 사업지침 참조

1 사업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간호등급) 상급종합병원 1등급, 종합병원 1등급, 병원 3등급 이상
 - 의료취약지³⁾ 및 군(郡)지역 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⁴⁾은 종합병원 2등급, 병원 4등급 이상인 경우에도 참여 가능
 - *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

- (인력운영) 일반병동 간호사 수 20명 이상

* 차등제 신고 산정인원 기준으로 정신과 폐쇄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외

2 사업모형

- (사업구성) ①교대제 개선 지원 및 ②교육전담간호사 지원

① 규칙적인 교대 근무제 정착을 위한 대체간호사 지원

② 체계적인 간호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사업 구분	교대제 개선 지원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지원 내용	대체간호사팀 운영 지원	교육전담부서(팀) 운영 지원
	대체간호사, 지원 간호사 인력 지원	교육총괄간호사, 현장교육간호사 인력 지원
성과평가 (반기별)	성과지표	1. 결원 대체율, 2. 계획 근무 준수율, 3. 신규간호사 전년대비 이직률
	모니터링 지표	1. 3교대제 운영 비율, 2. 교육 운영 성과, 3. 환자 안전 성과, 4. 경력간호사 보유율
지원금 지급	반기별 평가 결과 반영하여 지원금 차등 지급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따른 의료취약지역

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의거한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공공보건기관(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을 제외한 공공의료기관

- (지원내용) 세부 사업별 지원 인력 인건비 지원
 - (가산) 간호등급 기준 충족한 취약지·군지역 의료기관 10% 가산
 - (감산) 대체간호사 경력기준 완화 적용 시 5~10% 감산
- ※ 상급종합병원 70%, 종합병원 이하 80% 지원(참여기관 20~30% 부담)

< 1인당 연간 지원 금액 >

구분	교대제 개선 지원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상급종합병원	대체간호사	4,096만원	교육총괄간호사	3,977만원
	지원간호사	3,181만원	현장교육간호사	
종합병원·병원	대체간호사	4,681만원	교육총괄간호사	4,545만원
	지원간호사	3,636만원	현장교육간호사	

- (지원금 지급) 반기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 (인력기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간호사를 병상구간에 따라 배치

< 지원 인력 역할 및 자격 조건 >

구분	역할	자격 조건	지원인원 수
① 교대제 개선 지원 (지원 인원수는 전체 간호사 수의 10% 상한 적용)			
대체간호사	- 긴급 결원(결근, 경조사 등) 발생 시, 결원자의 근무 대체 - 결원 미발생 시 참여병동 내 환자간호 업무	임상경력 3년 이상 또는 소속병원 2년 이상 (상중은 5년 이상 또는 소속병원 3년 이상)	병상구간별 기준인원 (2~19인)
지원간호사	- 대체간호사팀 지원 업무 (결원 현황 취합, 시범사업 자료제출, 기타 팀 관련 행정업무 등) - 필요시 참여병동 지원 업무	-	병상구간별 기준인원 (1~3인)
②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교육총괄간호사	- 교육과정의 기획·운영 및 평가, 개발 담당 - 현장교육간호사 및 프리셉터에 대한 조언 및 지도, 고충 관리 - 전체 간호사(신규 포함) 교육 관련 업무 수행	임상경력 3년 이상	기관 당 1인
현장교육간호사	- 프리셉터십 기간 신규간호사 개별 실무교육 및 추가교육 지원, 프리셉터 지도 및 관리 - 신규간호사 업무지원 및 코칭 시행 - 병동 간 재배치, 복직 간호사 교육 지원	최근 2년 이내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 이수(간협, NMC)	병상구간별 기준 인원 (0~8인)

③ 성과평가

○ (평가주기) 시범사업기간 중 반기별 운영성과 평가

* '25년은 4개월(9~12월)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 (평가지표) 총 7개 지표(성과지표 3개, 모니터링 지표 4개)

구 분	평가지표(가중치)	평가내용
성과지표	1. 결원 대체율(30)	• 참여병동 결원발생에 대한 대체근무 비율
	2. 계획 근무 준수율(30)	• 참여병동 간호사의 근무가 계획대로 실제 운영된 비율
	3. 신규간호사 전년대비 이직률(40)	• 입사 2년 이내 신규간호사 이직률의 전년대비 차이
모니터링 지표	4. 3교대제 운영 비율	• 참여병동의 3교대제 근무 간호사 비율
	5. 교육 운영 성과	• 교육전담간호사 1인당 신규간호사 수 • 신규간호사 1인당 교육시간 • 교육계획 수립 및 수행, 평가, 환류 등 교육운영 적정성(비계량)
	6. 경력간호사 보유율	• 3년 이상 경력간호사 보유율
	7. 환자 안전 성과	• 참여병동의 낙상·욕창·투약오류 발생건수

※ 모니터링 지표는 결과만 산출하며 종합점수 및 평가등급에 반영되지 않음

○ (평가등급) 성과평가에 따라 산출된 기관별 종합점수에 의해 등급이 결정되며, 등급별 지급률에 따른 지원금 지급

- 등급 산출 세부기준(평가등급 구간 및 지급률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평가위원회 논의 후 결정, 추후 안내 예정

참고 2

「제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참여 신청방법

□ 접속 경로: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 인증서 로그인 > 시범사업 신청 >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 화면 위치

○ 인증서 로그인 > 시범사업 신청 >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클릭

The screenshot shows the HIRA system homepage. The navigation menu at the top includes '업무안내', '시범사업 신청' (highlighted with a red box), '시범사업 서식관리', '등계', and 'HIRA e-Form Agent'. Below the menu, there are several icons representing different services. On the right side, there is a '공동인증서 로그인' (Joint Certificate Login) button, which is also highlighted with a red box. Below this button are links for '인증서등록' and '공동인증센터'. At the bottom of the page, there is a footer with '업무안내', '시범사업 신청' (highlighted with a red box), '시범사업 서식관리', '등계', and 'HIRA e-Form Agent'. Below the footer, there are links for '시범사업 일정',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highlighted with a red box), and '시범사업 신청내역 조회'.

○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등록 화면

① 시범사업명 '제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선택

②~③ 내용 입력

④ '시범사업 참여약정서' 내용확인 클릭

The screenshot shows the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등록' (Participating Institution Application Registration) screen. The left sidebar has a menu with '시범사업 일정',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highlighted with a red box), and '시범사업 신청내역 조회'. The main content area has a form with the following fields: '시범사업명' (1) '제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highlighted with a red box), '요양기호' 11100338, '요양기관명'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신청일자' 2025-07-11, '신청구분' 포탈신청, '신청시작일' 2025-07-11, '신청종료일' 2025-07-31, '담당자 전화번호' (2) 내용입력, '담당자 메일주소' (3) 내용입력, '기타내용', '시범사업참여약정서' (4) 내용확인 [확인] (highlighted with a red box), '약정서 동의여부' (5) 동의 (highlighted with a red box), and '동의' (radio button). There is also a '다운로드' button. At the bottom, there is a table for '참고 자료' with columns for '파일명' and '파일용량'.

→ 팝업창 내용 확인 후 → '닫기' 버튼 클릭

제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참여약정서

기관명 :
요양기관기호 :

위 기관은 제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이하 "시범사업") 수행기관(이하 "시범기관")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지원금 반환 및 시범사업 기관 지정 취소 등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조치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본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1. 의무 및 협조

가. 시범기관은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당사자인 간호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복지부가 협의 등을 요청하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나. 시범기관은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복지부의 요청 사항에 대해 적극

닫기

⑤ 약정서 동의여부 '동의' 선택

○ 시범사업 제출서류 등록(필수)

① '추가' 버튼 클릭 하여 제출서류 파일 업로드

→ ① 참여 신청서 ② 계획서 ③ 이행약정서 ④ (선택)시행 합의서

② 제출서류 업로드 내역 확인

추가사항

첨부파일

첨부파일	파일명	파일용량
②		

참여 약정서 내용에 동의하며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5 년 07 월 일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① 추가 **삭제**

③ 신청

③ '신청' 버튼 클릭하여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 등록 완료